

# 재정운용세칙

[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정운용 세칙]

2023.09.03. 제 정

## 전문

제 1 장	총칙	.....	1~5
제 2 장	재정 운용의 원칙	.....	6~7
제 3 장	회계	.....	8~9
제 4 장	기구 별 재정	.....	10~16
제 5 장	세칙 개정	.....	17~18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세칙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 운용단위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이념)** 본회의 재정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

### 제3조(대표자의 책임)

- ① 학생회장단, 집행위원회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본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본 세칙은 본회의 집행기구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.

**제5조(정보공개)**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모든 경비의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.

##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

### 제6조(예산안 · 결산안 심의의 원칙)

-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집행기구는 예산안 · 결산안을 공개하여야한다.
- ② 예산안은 본 세칙 8조(예산안의 편성)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결산안은 다음 각 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.
  1. 온라인 결제 : 온라인 영수증
  2. 오프라인 결제 : 결제시 영수증
  3. 예산집행에 관한 거래내역서

4 예산안 · 결산안의 작성은 재정 활동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
#### **제7조(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 집행의 원칙)**

-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는 본회 각 기구의 운영, 행사, 사업, 홍보 등에 사용된다.
-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. 단,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.
- ③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.
- ④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.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.
- ⑤ 제1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### **제3장 회계**

#### **제8조(예산안의 편성)**

-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 · 관 · 항 · 목 · 단가 · 수량 · 합계 형식으로 하되 항은 각 사업별, 행사별로 구분하고, 목은 물품의 종류 별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필요 시 세항과 세목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.
- ③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.
- ④ 예산안은 지출내역을 편성하여 해당 학기 초 학생총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단, 학생총회의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.

#### **제9조(결산안의 작성)**

- ① 결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 · 관 · 항 · 목 · 단가 · 수량 ·

합계 형식으로 하되 항목은 각 사업별, 행사별로 구분하고, 목은 물품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정한다.

- ② 필요 시 세항과 세목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모든 결산에는 본 세칙 6조 3항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결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.
- ⑤ 결산안은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 단, 학생총회의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## 제4장 기구 별 재정

### 제10조(의결기구 재정)

-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, 학생총투표,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기구 운영에 사용된다.
-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, 재정 운용의 책임은 집행위원회에 있다.
- ③ 의결기구 재정은 사무용품비 및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·결산안 작성 시 작성하며, 총무부장이 집행기구 예산안·결산안에 포함하여 학생총회에서 심의를 받는다.

### 제11조(집행기구 재정)

-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.
-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학생회장단과 총무부에게 있다.

### 제12조(집행기구의 학생회비 배정)

- ①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누어 예산, 집행, 결산된다.
  1. 부서별 행사 및 사업 재정

2. 운영비 및 사무비
3. 그 밖의 재정

### 제13조(차기 집행기구 이월금)

-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당해년도 집행기구의 학생회비 집행의 잔액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.

### 제14조(부서별 비용)

- ① 부서별 비용은 집행위원회 부서별 업무의 추진, 활동, 행사, 사업 선전,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.

### 제15조(운영비)

- ① 운영비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.
-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 제16조(기타운영비 재정)

- ① 기타운영비 재정은 선거공영기금과 각 상설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 되며, 본회 예비금을 포함한다.
- ② 기타운영비 재정 운용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, 상설위원회의 재정 담당자 혹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 있다.

## 제5장 세칙 개정

### 제17조(제정·개정·폐지)

- ① 본 세칙개정 제정안, 개정안, 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.
  1.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의 연서에 의한 발의
  2. 본회 회원 1/10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
  3.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

## 제18조(결정)

- ① 세칙 제정안, 개정안, 폐지안 발의 시 학생총회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, 세칙개정 발의 7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심의·의결한다. 이 때, 특별한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긴급 소집이 가능하다.
-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정운용세칙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학생총회에서 정회원과 준회원 1/5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학생총회의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